

문서번호	문화체육과-10394
결재일자	2015.4.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문화관광담당	문화체육과장	교육문화복지장	부구청장	구청장
유현희	이명근	장순봉	도일환	김병환	04/21 김영배
협 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성북구 출자·출연기관 향후 운영 계획

2015. 4.



교육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성북구 출자·출연기관 향후 운영 계획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운영 계획을 세워 적용함으로써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함.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시행일 : 2014. 11. 10
- 주요내용
 - ①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 ② 출자·출연 기관장의 성과계약서 작성과 평가
 - ③ 출자·출연 기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의 실시 등
- 관련 지침 :
 - 지방 출자·출연기관 조직·인사 지침
 -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지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적용대상

- 출자기관 : 지방자치단체 지분이 50% 미만 지분출자,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공기업
(지역경제, 주민소득 증대 등, 개별법 적용)
- 출연기관 :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의해 설립된 재단 법인이고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
(문화, 예술창작, 자선 등 개별법 혹은 조례 적용)
- 우리구 출자·출연기관 적용대상 : 성북문화재단
 - ※ 성북문화재단은 **출연기관**에 해당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적용대상) 3항)

세부내용

1) 조례제정

- 조례명칭 :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조례제정안 :
 - 출자·출연 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법 제6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성과계약 (법 제11조)
 - 사업대행 사업의 비용부담 (법 제21조)
 - 법 제25조(지도감독 등), 법 제26조(검사·보고 등), 법 제27조 (운영지침 통보)
 - 법 제28조, 법제30조, 법 제31조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관련

2)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 근거법률 : 지방출자출연법 제6조(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동법 시행령 제4조
- 구성 : 심의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 (위원장 : 부구청장)

위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지방의원은 제외) 3명 이내
- 전체 위원수의 1/4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 법조계, 경제계, 언론계, 학계 및 노동계 등의 분야에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중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 주요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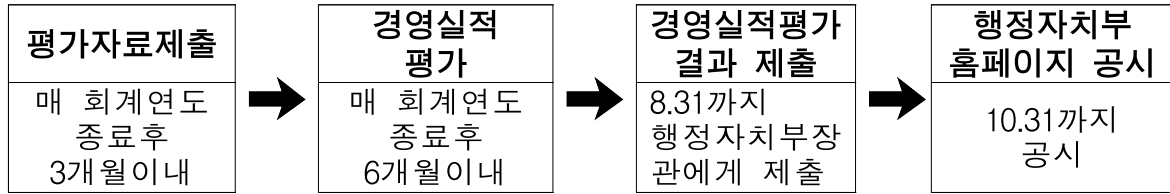
-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
-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임요구
- 경영실적 평가 제외 대상기관의 선정
- 경영진단 대상기관의 선정
- 경영진단결과 필요한 조치 등

3) 성과계약

- 근거법규 : 지방출자출연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성과계약)
- 내용 :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중 달성하여야할 경영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여 다음연도 보수책정시 계약내용의 달성정도를 반영
- 계약시기 : 매 회계연도 개시후 1개월 이내

4) 경영실적평가

- 근거법규 : 지방출자출연법 제28조 (경영실적의 평가)
- 평가방법



○ 평가자료

- 주요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
- 조직·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 전년도 결산서
- 최근 3년간 경영실적
- 성과계약서상 계약내용의 달성정도
- 경영실적의 평가와 관련된 사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경영진단 실시

- 근거법규 : 지방출자출연법 제30조 (경영진단의 실시)
- 대상 :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경영진단 실시여부 결정
- 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영진단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출자·출연기관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향후 계획

-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성과계약 체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성북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 경영실적평가 실행